



원산지관리, 현장의 목소리

인증수출자제도와 원산지관리

변달수 | 다미관세사무소 대표관세사

쉽게 설명하는 IPEF vs. CPTPP

최완규 | 한국원산지정보원 활용연구팀 원산지관리사

인증수출자제도와 원산지관리



변달수
다미관세사무소
대표관세사



1 들어가며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성장했거나 생산, 제조·가공된 국가를 말한다. 원산지규정이란 상품의 원산지국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각종 법률, 규칙 및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적 결정으로서 그 적용목적에 따라 통상 특혜 규정과 비특혜규정으로 분류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들이 회원국이 원산지인 물품에 대해 서로 관세율을 인하하는 특혜를 제공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특혜규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특혜목적의 FTA를 활용하여 관세특혜를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가 필수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원산지증명서 발급할 때는 수출물품 별로 원산지결정기준을 검토하여 원산지를 판정해야 하는데, FTA 협정별 규정이 난해하고 구비해야 할 서류가 복잡다양하여 이에 대하여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기고문에서는 상기 어려움에 대하여 일부 해결책이 될 수 있는 인증수출자 제도를 알아보고자 한다.

2

인증수출자의 개념과 종류

가. 인증수출자의 개념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란 우리나라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종류로는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와 품목별 원산지인증 수출자가 있다.

나. 인증수출자의 종류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경우 인증을 취득하면 해당 인증기업이 수출하는 모든 협정국, 모든 품목에 대해 인증수출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에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경우에는 인증 취득 시 인증받은 협정과 인증받은 물품(HS CODE 6단위)에만 혜택을 한정하고 있다.





인증의 유효기간은 두 인증수출자 모두 5년이다. 다만,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경우 원산지조사 거부 사실이 있거나 원산지증빙 서류 보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짧게 정할 수도 있다.

인증기관은 두 인증수출자 모두 본부세관(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및 평택직할세관이다.

따라서, 인증받으려는 기업의 일선세관이 아닌 본부세관으로 신청해야 함에 유의한다.

예를 들어, 대전 소재 기업의 경우 대전세관(일선세관)에 인증신청을 하는 것이 아닌 서울 본부세관에 신청해야 한다.

상기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1] 인증수출자 구분

구 분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혜택범위	모든 협정, 모든 품목	인증 받은 협정별 HS 6단위
유효기간	5년(단, 품목별 인증수출자의 경우 차등적용 가능)	
인증기관		본부세관 및 평택직할세관
인증기준	협정상대국별 원산지증명능력 및 법규준수도	HS 6단위별 원산지증명능력 및 법규준수도

다. 인증기준

상기에서 살펴보았듯, 업체별인증수출자가 혜택의 범위가 더 넓다.

그러나 혜택 범위가 넓은 만큼 인증의 기준은 조금 더 엄격하다고 할 수 있다. 관련하여 인증 수출자 종류별 인증기준은 아래와 같다.

(1)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업체별인증수출자 인증을 취득할 수 있다.

① 수출실적이 있는 물품 또는 새롭게 수출하려는 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HS CODE 6단위 기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전산처리시스템을 보유하고 있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증명할 능력이 있을 것

②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거부한 사실이 없을 것

③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관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산지관리전담자를 지정·운영할 것

④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서류의 보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을 것

⑤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신청하거나 작성·발급한 사실이 없을 것

(2)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품목별인증수출자 인증을 취득할 수 있다.

① 수출실적이 있는 물품 또는 새롭게 수출하려는 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품목번호 6단위를 기준으로 한다)일 것

②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관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산지관리전담자를 지정·운영할 것

(3) 비교

상기 두 제도 모두 수출하는 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당연히 충족해야 한다. 또한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관리하고 원산지관리전담자

(예: 사내 원산지관리사 보유 등)를 지정·운영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추가적으로 업체별인증수출자의 경우에는 FTA 전산관리시스템 등(예 : FTA PASS)을 보유하고 서면조사 등 원산지조사 거부사실이 없어야 하는 등 관세행정 협력도나 높은 법규준수를

요구한다.

하지만, 품목별인증수출자 인증을 이러한 요건은 없기에 예를 들어, 원산지조사 거부사실이 있는 등 관세행정 협력도나 법규준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에도 품목별인증수출자 인증은 신청할 수 있다.

3 인증수출자의 원산지관리상 혜택

가. 인증수출자의 혜택

많은 수출기업들이 FTA 활용 시 애로사항이라고 말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수출건별로 수많은 원산지증빙서류를 구비하는 일이다.

기관발급기준으로 원산지증명서 한 건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원산지소명서, 원재료명세서, 제조공정도, 원산지확인서, 세금계산서, 원가산출내역서 등 수많은 원산지증빙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이는 바삐 돌아가는 수출기업의 실무담당자들에겐 참으로 곤욕스러운 일이다. 실무담당자들이 전적으로 원산지업무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이 부분에서 혜택을 줄 수 있다. 대부분의 기관발급협정에서는 인증수출자에게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생략 및 심사간 소화라는 혜택을 주어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첨부서류 제출부담을 경감시켜 준다.

이와 별개로 한-EU FTA와 한-영국 FTA의 경우에는 6,000유로 초과하는 수출시 반드시 인증수출자를 득한 기업만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협정별로 인증수출자에게 제공하는 혜택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2] 협정별 인증수출자 혜택

협정	구분	인증	인증
한- EFTA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시 수출자의 서명 수기작성 필요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시 수출자의 서명 수기작성 생략 가능
한- EU 한- 영	자율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000유로를 초과하는 수출물품에 한하여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가능 -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시 수출자의 서명 수기 작성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000유로를 초과하는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가능 -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시 수출자의 서명 수기 작성 생략 가능
한- 아세안 한- 싱가포르 한- 인도 한- 베트남 한- 중 RCEP 한- 이스라엘 한- 캄보디아 한- 인도네시아	기관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작성 (전산으로 신청) - 첨부서류 제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출신고필증사본 2. 원산지소명서 3. 원산지확인서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4. 그 밖의 원산지 증빙자료 - 현지확인(필요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작성 (전산으로 신청) - 첨부서류 제출 생략 - 현지확인 생략 가능
RCEP 한- 캄보디아	자율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수출자)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불가 - [RCEP] (수출자 또는 생산자)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가능<유보> <p>※ <유보> [RCEP] 제3.16조에 따라 이행 예정 (국가별 상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수출자)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가능
한- 인도네시아	자율발급 자율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수출자)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불가 - (수출자 또는 생산자)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가능<유보> <p>※ <유보>[한- 인도네시아 CEPA] 제3.15에 따라 이행 예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수출자)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가능<유보>
한- 이스라엘	자율발급	- 미화 1천달러 이하의 수출물품에 한하여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가능	
기타		동 제도 미적용	

4 인증수출자제도 활용유의사항

가. 인증수출자 인증은 한국산임을 공인해준다?

많은 수출담당자들이 인증수출자 인증을 '해당 기업의 물품을 모두 한국산으로 인정한다'는 세관의 국가공인 원산지마크같은 것으로 생각 한다.

따라서, 수출기업들이 인증수출자 취득 후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기업이 수출하는 모든 물품을 원산지판정도 하지 않은 채 한국산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이다.

주의할 점은 인증수출자 인증은 수출기업이 자율적으로 원산지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일 뿐 해당 업체의 모든 수출물품에 대해 한국산으로 공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인증을 받았더라도 수출되는 물품별로 원산지결정기준 검토 및 판정절차가 수반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인증받은 업체 또는 물품(HS CODE 6단위)라 할지라도 검토결과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면 해당 물품은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면 안되는 것이다.

나. 인증수출자의 경우 원산지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않아도 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인증수출자의 경우 기관발급 국가의 대부분은 원산지증명서 신청시 발급기관(세관, 상공회의소)에 제출하는 서류 중 상당 부분이 생략되며 심사가 간소화 되는 혜택이 있었다.

그러나 이는 발급기관에 제출을 생략한다는 것이며,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하고 보관하는 의무까지 면제해주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수출담당자의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와 이에 수반되는 증빙서류를 FTA 관세특례법에 따른 기간에 따라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증수출자라 할지라도 우리나라 관세당국이 행하는 원산지조사나 체약 상대국의 원산지사후검증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여전히 남아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해두어야 한다.

다. 인증수출자 번호를 대여할 수 있다?

인증수출자의 인증번호는 법인단위 또는 사업장 단위로 부여한다. 따라서, 자회사나 모회사가 대표자 및 사업자등록번호가 상이한 경우에는 인증수출자번호를 서로 대여해가며 사용할 수 없음에 유의한다. 즉, 수출자는 다른 회사의 인증수출자번호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인증수출자는 승계제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되는 등 기업의 분할, 인수합병 등으로 기업의 동일성 및 연속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인증수출자 인증을 새로 취득해야 함에 유의한다.

5 결론 및 소고

지금까지 원산지관리 측면에서 인증수출자와 개념, 종류, 혜택 그리고 활용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인증수출자의 인증취득절차나 실무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궁금한 경우에는 사용하고 있는 관세사무소나 관세법인에 문의하면 된다. 또는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나 지역 FTA 활용지원센터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자유에는 책임이 뒤따른다. 인증수출자 제도는 수출자에게 원산지를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이므로 관세당국이 수출기업에 어느 정도 자유를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작은 자유를 잘 유지하려면 어느 정도 책임(원산지 서류보관 등)에 대한 무게도 느껴야 할 것이다.



쉽게 설명하는 IPEF vs. CPTPP



최완규

한국원산지정보원 활용연구팀
원산지관리사



1 시작하며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8년 발생한 미·중 무역 갈등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 및 러-우 분쟁은 세계 무역시장의 흐름을 바꿔 놓기 충분했다.

초기 양자 간의 협정을 이루었던 FTA는 세계적인 이슈 속에 글로벌 공급망 안전에 대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해관계가 맞는 다수의

국가가 참여하는 Mega-FTA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Mega-FTA 중 최근 영국의 합류 결정이 되었고, 우리나라 또한 가입 절차 준비 중인 CPTPP와 미국 주도의 가장 큰 규모의 Mega-FTA인 IPEF에 대해 소개한다.

2 CPTPP와 IPE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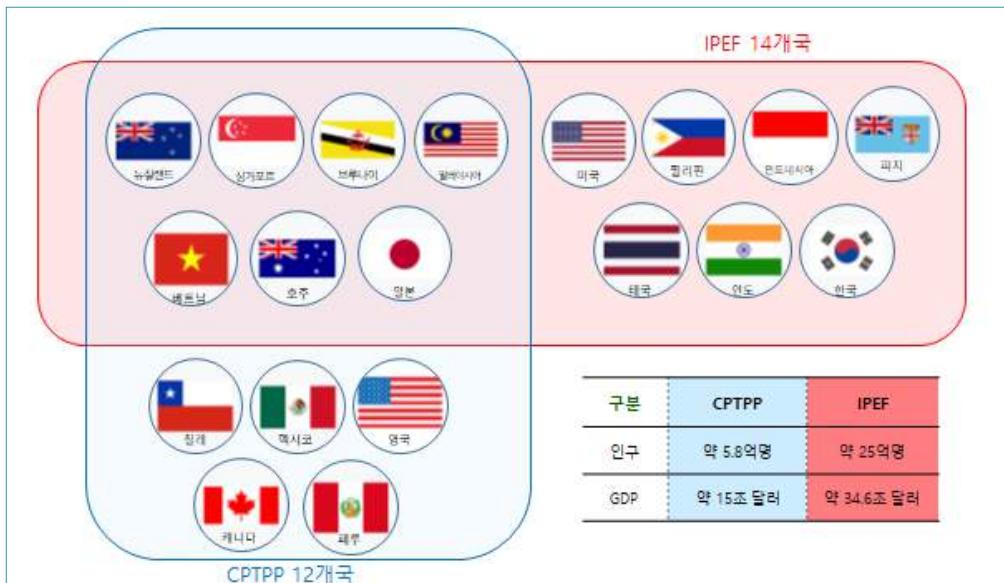
CPTPP는 기존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던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PP)에서 2017년 미국이 빠지면서 아시아·태평양 11개국 체제를 유지 하다 최근 2023년 7월 영국의 CPTPP 가입 결정이 나면서 12개국 체제가 되었다.

CPTPP에 가입하려면 참가국들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하며, 영국이 첫 번째의 추가 참여국이 되면서, 이후 중국, 한국, 대만 등의 나라들과 미국의 재가입 의사에 따른 CPTPP 추가 참여에 대한 제의가 남아있다.

협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1)농수산물과 공산품 역내 관세 철폐 (2)데이터 거래 활성화 (3)금융·외국인 투자 규제 완화 (4)국유기업에 대한 보조금 등 지원 금지 등을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의 제품에 대한 관세를 전면 철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경제협력체이다.

CPTPP는 기존의 TPP와 비교했을 때 미국의 탈퇴로 경제적 중요성이 감소했으나 환태평양 지역의 주요국들이 참여하고 디지털 통상 등 가장 최신의 무역 규범을 반영한 Mega-FTA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림 1] CPTPP와 IPEF의 참여국/인구/GDP



IPEF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 경제협력체로, 2022년 5월 23일 공식 출범했다.

IPEF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1년 10월 처음 제안한 것으로, 상품·서비스 시장 개방 및 관세 인하를 목표로 하는 기존의 무역협정과 달리 디지털·공급망·청정에너지 등 새로운 통상 의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목표를 갖고 있다.¹

IPEF는 기존 FTA가 관세 철폐에 초점을 맞춘 것과는 다르게 관세 철폐 및 인하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공급망·디지털·청정에너지 등의 신통상 이슈를 핵심 의제로 다루고 있다.

IPEF의 주요 내용으로는 (1)무역 (2)공급망 (3)청정경제 (4)공정경제 등의 4개 분야의 필러를 가지고 있고, 참여국은 필러별로 협상이 가능 하며, 행정명령에 기초하고 있어서 국회의 비준 없이도 바로 이행될 수 있다.

[그림 2] CPTPP와 IPEF의 경과 흐름도



1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3

CPTPP와 IPEF가 한국에게 미치는 영향

CPTPP 가입은 한국 수출의 높은 중국 의존도 문제를 완화하는 효과적인 정책일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한국 수출 무역에서 보완해야 할 부분인 일부 수출국과 수출상품에 대한 높은 집중도는 한국 경제를 중국 등 주요 수출국의 경제 변동성에 영향을 받게 하기 때문에 CPTPP 가입을 통해 한국 수출 지형을 확대함으로써 수출국과 수출품의 다변화가 가능하다.

또한, 미·중 간 무역 갈등의 심화에 따라 기존의 GVC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CPTPP 가입은 지역 중심의 가치사슬 구축을 가능케 함으로써 미·중 간 무역 갈등으로 인한 여파를 완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된다. 이 과정에서 한국이 불리한 여건에 빠지지 않도록 CPTPP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통상환경의 여러 변수를 고려하였을 때, 다자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무역을 확대해 나가고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대응해야 한다.²

IPEF 공급망 협정은 한국이 그간 체결한 협정 중에서 참여국의 경제 규모가 가장 큰 협정으로서, 선진·개도국뿐만 아니라 자원부국(호주, 인도네시아 등)과 기술 선도국(미국, 일본 등) 등 다양한 경제적 특성을 가진 국가가 함께 참여하여 상호 보완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의의가 있다.

공급망 위기 시 협력 메커니즘을 새로이 마련하여 공급망 안정화에 크게 기여하며, IPEF 참여국 중보다 심화된 협력을 희망하는 공통 분야가 있으면, 수급 다변화, 인프라 확충, 기술 협력, 물류 인프라 확충, 공급망 병목 점 해소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IPEF 참여국의 조치로 인해 공급망 교란이 발생하는 경우, IPEF를 활용하여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KIEF산업경제,「CPTPP의 미래와 우리의 대응방안」

